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
	○		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 (www.applyhome.co.kr)에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)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
	○		인감증명서 인감도장	본인	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 필수(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상세'로 발급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 비치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	○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주민등록번호 "모두공개" 발급)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
		○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 소득증빙서류
대리인 접수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당첨자 서류접수 위임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서류 이외에 자격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12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